

第59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7年3月26日(水) 午前11時

場 所 第1小會議室

議事日程

1. 第60回城北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審査된案件

1. 第60回城北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議長 提議) 1面

(11時12分 開議)

○委員長 高允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북구의 회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요즘 보도를 통해서 익히 잘 아실줄로 믿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어렵게 태동시킨 지방자치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인은 굳게 믿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第60回城北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
- (議長 提議)

(11時13分)

○委員長 高允根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의견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회기일정안은 4월8일부터 4월14일까지 7일간이며, 본임시회기간중 처리하여야할 안건은 의원발의 2건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3건의 개정조례안 및 서울동북부지역환경행정

협의회규칙안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사일정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경주위원님.

○文京周委員 4월11일날 구정질문이 있는데, 구정질문의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高允根 며칠요?

○文京周委員 4월11일날 구정질의가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씩 정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제한없이 구정질문할 수 있습니까?

○委員長 高允根 예. 이 안은 우리 의사제장님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議事係長 洪德熹 이번 구정질문은 하루에 해야되는 사항이므로 전체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안에 불과한 것이지만, 위원회별로 위원을 지정해서 구정질문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하루에 구정질문을 하시는데 가장 적절한 인원은 7명내지 8명 정도로 봅니다. 그렇다면 행정위원회하고 시민복지위원회, 지역개발위원회 각 위원회에서 2명내지 3명씩 선정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 그 분들은 질문요지서라든가 이런 내용을 그 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질문요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이번 구정질문은 하루동안 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인원을 제한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상입니다.

○委員長 高允根 송하성위원님.

○宋夏星委員 구정질문을 전반적으로 할려고 한다면 이틀이고 삼일이고 일정을 늘려서라도 해야되지 구정질문을 해야될 사항이 많은데도 7~8명선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할 필요도 없어요. 날짜를 연장을 해서 금요일날 못하면 월요일날까지해서라도 할 수는 것이 되어야지, 5명, 3명 정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할 말이 많은데도 못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간추려서 한다고 하면 또 물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몇 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저는 구정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구정질문이 안될 것 같네요. 날짜를 늘리든지 숫자를 늘리든지 시간을 늘리든지 하는 방법으로해서 할 사람이 42명중에 너무 많을 것인데,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委員長 高允根 또 김영식위원님 말씀해주세요.

○金榮植委員 김영식위원입니다. 송하성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하루에는 구정질문이 바쁠것이 아니냐, 물론 오전 오후로해서 각 국장들 참여시켜서 관계관 참여시켜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해야 안되겠느냐, 이틀정도 하면 두개 상임위원회별로 해가지고라도 이를 정도는 한 상임위원회 2명이나 3명으로 제한하더라도 구정질문이니깐 한 이틀정도로, 날짜는 이 범위내로 하더라도 다른 상임위원회를 축소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한 이틀정도 했으면 좋지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高允根 또 다른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文京周委員 전반기에 저희들 의회의 운영사항을 봤을 때에 7월달에 구정질문이 있었고, 또 그 이전에는 1년에 한번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분기별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

은 진일보적인 현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구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모아가지고 한번 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안이 있을때 그때그때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정도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질문할 수 있는 요지를 규합해가지고 좀더 효과적인 그런 질의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구정에다가 질의를 했을 때에 상당히 효과적이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라도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高允根 다른 위원님 또. 이승로위원님 말씀해주세요.

○李承魯委員 앞서 우리 송하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동감을 하면서 금년 하반기 의회 운영일정에 아마 분기별로 하기로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에 4번을 하게되면 구정질문, 그러니까 그 요지가 상당히 분산이 되지않느냐, 그래서 아마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구정질문 대상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아까 의사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제한을 한다 이 방법은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상임위원회별로 몇 분씩 선정해서 조정하는 관계는 필요하다. 구정질문이 우리가 연말에 하던 식으로 며칠간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상임위원회별로, 과거에는 하루에 18명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도 가능하고 12,3명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한다라는 이런 어구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그렇다면 구정질문하기에 앞서서 3일전에 질문요지를 제출하고 이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 상임위원회별로 별도 어떤 상임위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 과정에서 조정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9일날 하고 10일날하고 이를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데 그 전에 상임위원 어떤 모임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10일날 구정질문요지서를 내가지고 11일날

구청 집행부로부터 성의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된다면 9일날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질문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조정을 해서 10일날 질문요지를 구청에 제출해도 괜찮은지 이 부분까지 우리가 오늘 여기서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高允根 또 다른 위원님. 이대일 위원님.

○李大一委員 일단은 상임위원회별로 접수를 받아보세요. 그래가지고 10명이 될런지 5명이 될런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한번 접수를 받아보고 그래가지고 하루를 하기로 하든지 아니면 숫자가 많아졌을 때 이를 하기로 한다든지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지 지금 접수도 안받은 상태에서 결정이 안되죠. 이상입니다.

○委員長 高允根 김갑제위원장님.

○金甲濟委員 제가 보는 것은 이번에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조금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숫자가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로 하지말고 상임위원회 이들이 있으니까 하루를 더 의원들한테 접수를 받아가지고 조정을 해보죠. 그래서 하루로 정하지는 마시죠. 만약에 인원이 많으면 2일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일단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이 다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조정을 해보자구요. 하루는 대단히 힘들거예요. 하루는 힘듭니다.

○金榮植委員 관계관들이 다 와야 되는데,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金甲濟委員 그러니까 구정질문을 이틀로 하는 것으로 보고 한번 조정을 해보세요.

○宋夏星委員 그러니까 틀에 박혀서 7명이나 8명으로 제한하지말고 이틀로 해서 하다가 가령 하루하고 끝난다고 한다면 더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정질문을 더 넣어 야지, 상임위원회 활동은 이틀동안이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金甲濟委員 글쎄 상임위원회 이틀이면 오히려 그것이 많은 거예요.

○宋夏星委員 상임위원회를 하루종일도 할 수 있고, 우리들끼리 하는 것은 하루정도 할 수 있고, 구정질문은 이틀동안 하는 것

으로 해서 어떤 제한을 두고 하는 것 보다는 사람의 인원의 제한이나 시간의 제한 보다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金榮植委員 위원장.

○委員長 高允根 김영식위원장님.

○金榮植委員 날짜 하루더 연기는 안됩니까? 14, 15일 할 수는 없습니까?

○委員長 高允根 그러면 의사계장님께서 1일 하고 2일하고의 차이점 기간 시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하루를 연기할 수는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金甲濟委員 연장하지 않아도 상임위원회 활동이 2일이니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루로 줄이면 충분히 안되겠습니까?

○委員長 高允根 제가 말씀한 것은 아까 이승로간사님께서 말씀한대로 우리가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생각하는 범위는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장님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틀을 짜놓고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임시회의에 수시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보면 정기회의때 이르게되면 충분한 시간여유가 있어가지고 자료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날짜의 짜임새가 잘 되는데 이렇게 7일간 일정을 하다보니까 하루가 되든지 이를해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한번 의사계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議事係長 洪德熹 의사계장 홍덕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의장님께서 의사일정을 잡은 안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원안의결하시면 되시고, 이 의사일정안이 합리적이지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회의일자를 늘릴 수도 있고 구정질문 일자를 늘릴 수도 있어가지고 운영위원회 안을 의장님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장님은 의장님 안과 운영위원회 안 두 안을 가지고 최종결정은 의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일자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구정질문 일수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어떻게든 의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高允根 그리고 구정질문을 하루 할 때하고 이틀할 때하고 우리가 자료문제라든가 구청과 협의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議事係長 洪德熹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자료문제 요구라든가 이런 것은 시간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무국에서 24시간 전까지 질의요지서를 관계부서에 반드시 이첩해줘야 되고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요구서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 내용만 있을 뿐이지 하루를 했든 이틀을 했든간에 절차상의 변동은 없습니다.

○委員長 高允根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金榮植委員 일정은 이대로 하고, 구정질문만 이틀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지우죠. 같은 얘기이니까, 그것은 받아보고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자가 몇명 없으면 하루로 끝내고 일정대로 하는 것이고, 많으면 하루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루 줄이고 이런 안으로 해서...

○李承魯委員 지금 이 안이 의장님 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임위 활동을 이틀로 잡은 근거는 상임위원장님들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것을 먼저 알고 싶어요. 왜냐면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상임위원회가 이틀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틀간을 잡아놨으면 그 부분도 우리가 가급적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委員長 高允根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 일정을 잡다보니까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조례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례 하나를 가지고 시간적으로 해서 이틀간을 한 것이지 꼭 상임위원장님들이 이렇게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4월9일날하고 구정질문을 10일, 11일날 2일간을 하면 어떤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될 문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시다면 질문을 2일간으로 하고 상임위 활동을 우리 운영위원

님들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를 줄이자고요」하는 이 있음)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김영식위원님께서 수정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의사 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金榮植委員 폐회하기 전에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핵폐기물 북한반출 대만정부만행규탄 및 철거촉구결의안을 우리가 하나 내야되지 않겠느냐, 다른 의회에도 내고 있고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정부가 다른 것 때문에 시점이 되었습디만, 이런 결의안도 우리 성북구의회에서도 하나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지난번 우리 임시회때 당연히 내야 되는데, 그당시 못낸 것이거든요. 이번에 임시회때는 이런 결의안이라도 제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高允根 조금전에 우리가 이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선포를 했기 때문에 방금 김영식위원님이 발의하는 내용은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時33分 散會)

○出席委員 10人

高 允 根	李 承 魯	金 甲 濟
金 榮 植	文 京 周	徐 榮 振
宋 夏 星	李 大 一	李 龍 燮
崔 桂 洛		

○缺席委員 5人

金 南 孝	金 壽 榮	朴 景 錫
崔 東 煥	許 東 翼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崔 石 根
---------	-------